

1998. 12. 7

1999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

예산안 주요내역

■ 총괄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6,366억 2,045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361억 8,121만원 대비 13.5%인 995억 6,075만 4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세입예산안은

◆ 구성비는

국가 부담수입 93.8%,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 0.0%,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6.2%,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0.0%로 구성되었음

◆ 국가부담수입은

5,968억 6,660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1%가 감액되었음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202억 300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의 6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7.0% 감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보통교부금은 보통교부금 4,044억 9,100원,

신설학교 2개교 교부금 122억 5,200만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의한 증액교부금은 34억 6,000만원

- ②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은
1,453억 9,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2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16.2% 감액
- ③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302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4.8%를 점유
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16.9% 증액
- ④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지원금은
컴퓨터실 전산보조원 인건비 4억 200만원등 16개사업비 9억
7,66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0.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83.0% 감액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억 5,695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의 0.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96.6% 감액

-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전입금인
법정전입금은 전액 계상되지 않았음
- ②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자영농과 기숙사식비인 비법정전입금은 1억 5,695만원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95억 9,690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의 6.2%를 점유하고 있으
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46.9% 감액

- ① 재산수입은 6억 4,434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의 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0.1% 감액되었음
- ② 입학금및수업료수입은 365억 7,363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의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1.8% 감액
- ③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 4억 2,320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3% 감액
- ④ 잡수입은 19억 5,57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7.1% 감액되었으며, 실습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임
- ⑤이월금과 지방교육채는 과목존치임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은 과목존치임

■ 세출예산안은

◆ 관별 구성비 (증감률) 는

교육위원회비 0.0%(▲19.1%), 급여관리 71.4%(▲0.5%),
 교육행정비 2.1%(▲12.1%), 교육사업비 0.9%(▲35.5%),
 학교비 9.1%(▲23.6%), 사학지원비 7.2%(▲11.4%),
 시설비 8.4%(▲54.5%), 제지출경비 0.0%(27.8%),
 예비비 0.7%(▲45.0%)임

◆ 성질별 구성비 (증감률) 는

인건비 78.1% (▲1.2%), 물건비 8.6% (▲11.5%)
경상이전 1.9% (4.3%), 자본지출 10.6% (▲55.0%)
기타경비 0.0% (0.0%), 예비비 0.7%(▲45.0%)임

◆ 기능별 구성비 (증감률) 는

교육위원회 0.1% (▲11.4%), 본청 80.8% (▲6.8%)
지역교육청 18.4% (▲33.1%), 예비비 0.7%(▲45.0%)임

◆ 주요 투자사업 구성비 (증감률) 는

- 공무원 인건비 4,843억 2,510만 9천원 76.0% (▲0.6%)
- 명예퇴직수당 65억 1,000만원 (▲16.7%)
- 순회코치 인건비 7억 1,352만원 (▲6.5%)
-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5억 8,260만 3천원 (▲27.1%)
- 원어민 영어교사 6억 2,685만 6천원 (▲52.8%)
- 교원 연수 15억 3,120만 3천원 (▲52.8%)
-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47억 1,146만 4천원 (10.4%)
- 공무상재해보상금 13억 500만원 (50.0%)
- 교육청 및 학교평가 6억 3,000만원 (▲13.2%)
-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77억 3,053만 2천원 (▲32.4%)
- 학교기본운영비(공립) 263억 2,361만 4천원 4.1% (1.2%)
-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38억 2,746만 8천원 (▲0.9%)

- 건물유지비 36억 7,130만 4천원 (4.0%)
- 무상교과서대금 24억 134만 7천원 (▲0.1%)
- 교단선진화 50억 12만 5천원 0.8% (▲6.7%)
- 학교급식 운영 74억 4,267만 4천원 1.2% (▲15.3%)
- 신설학교 교구구입 24억 3,800만원 (28.7%)
- 학교소규모시설물 수선 13억 6,200만원 (46.5%)
-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1억 350만원 (▲57.4%)
- 직업교육 확충 10억 2,859만 6천원 (▲55.3%)
- 학습준비물 지원 12억 1,233만원 (신규)
- 산업체특별학급 운영 7억 5,278만 6천원 (▲19.8%)
- 통학버스 운영 및 구입 7억 7,760만 1천원 (62.0%)
- 순회교사 여비 3,400만원 (70.0%)
- 교육감 선출 5,135만 3천원 (신규)
- 교육환경개선비 302억 9,200만원 (▲31.9%)
-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9억원 (▲14.8%)
- 초중통합운영학교 시설비 10억 3,516만원 (신규)
- 신설학교 시설비 163억 8,665만 6천원 2.6% (▲57.1%)
- 교육용 S/W 보급 2억 8,375만원 (▲49.1%)
- 학습자료 개발 3억 8,851만원 (▲48.4%)
- 기타사업비및관서당경비 171억 6,647만 3천원 (▲74.1%)
- 예비비 47억 492만 2천원 (▲45.0%)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중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도는 도세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정전입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유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30.7%나 감소된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한 사유
3.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46.9%나 감액되어 계상되었는데, 특히 재산수입 80.1% 감액, 잡수입 57.1% 감액, 이월금 100% 감액 등에 대한 사유와 국가부담 수입이 600억원이나 감액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을 350억원이나 감액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방안은

▣ 세출예산안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1. 주요 투자내역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내역 및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교육위원회 삭감관련>

- 원어민 영어교사 6억 2,685만 6천원 (▲52.8%)
- 신설학교 교구구입비 24억 3,800만원 (28.7%)

<예산증액 관련>

-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47억 1,146만 4천원 (10.4%)
- 공무상재해보상금 13억 500만원 (50.0%)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관련>

- 교육청 및 학교평가 6억 3,000만원 (▲13.2%)
- 교단선진화 50억 12만 5천원 0.8% (▲6.7%)
- 학교소규모시설물 수선 13억 6,200만원 (46.5%)
- 학습준비물 지원 12억 1,233만원 (신규)
-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9억원 (▲14.8%)

▣ 또한 수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서상의 명칭변경을 위주로 한 것으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